

##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9.

산업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. 11. 17.

나. 제출자: 칠곡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3. 11. 22.

라. 상정일자: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(2023. 11. 29. 상정·심사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출설명자: 투자유치과장 장미진)

#### 가. 제안이유

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1)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
2)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
- 실태조사, 상담 및 고충 해결, 교육, 한국문화 이해 증진, 고용제도 홍보 등

3)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이용시간: 09:00 ~ 18:00

- 휴무일: 공휴일, 토요일 등

- 4) 운영의 위·수탁,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8조)
  - 직영 운영 또는 비영리 법인·단체에 위탁 가능
  - 수탁기관 선정 기준: 인력,·기구·장비·시설·기술 수준, 재정능력, 공신력,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, 사업 실적 등
  - 위탁기간: 3년 이내(재계약 가능)
- 5)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제10조)
  -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안창호)

#### ○ 「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,
- 관련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